

면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대토론회 전체일정표

	토론회 소주제	일시 · 장소
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대토론회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 무엇을 담아야 하나?	5.10(월) 14:00 롯데호텔 (서울)
2차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방안	5.12(수) 14:00 BEXCO (부산)
3차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5.18(화) 14:00 리베라유성호텔 (대전)
4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스템 개선 방안	5.25(화) 10:00 서울여성플라자 (서울)
5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	6.4(금) 14:00 코리야나호텔 (서울)
6차	노후건강 보장 및 고령친화 환경조성 방안	6.9(수) 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7차	일-가정 양립이 용이한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	6.16(수) 10:00 서울여성플라자 (서울)
8차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6.23(수) 14:00 코리야나호텔 (서울)
9차	성공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6.29(화) 14:00 롯데호텔 (서울)

식 순

P · R · O · G · R · A · M

- ▣ 일시: 2010. 6. 23(수) 14:00~17:30
- ▣ 장소: 서울 코리어나호텔 글로리아홀(7층)
- ▣ 주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13:30~14:00 등 록

14:00~14:30 개회식

개회사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축 사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4:30~15:30 발 표 1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와 쟁점”

발 표 2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통합 실행조직 운영방안”

15:30~15:40 휴 식

15:40~17:30 좌 장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소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정책부장

정창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복지정책위원

(가나다 순)

자유토론 및 폐회

차 례

C · O · N · T · E · N · T · S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와 쟁점	1
------------------------------------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통합 실행조직 운영방안	23
--	----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1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와 쟁점

정 경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01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와 쟁점¹⁾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제1절 노인의 소득 실태 및 정책현황과 문제점

1. 노인의 소득 실태

- 전체인구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노인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고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음.
- 가처분 가구소득 기준으로 볼 때 OECD 평균 노인의 소득은 전체인구의 82.4%수준이며, 한국노인의 경우 동 비율이 70% 미만으로 회원국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우리나라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노화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기가 매우 높음(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09』)
- 노인가구의 경우 기초보장수급층이 7.2%로 비노인가구의 2.5%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노인가구의 법정차상위층의 비율은 17.2%, 소득차상위층의 비율은 15.3%임.
- 이는 비노인가구의 3.3%와 4.0%에 비하여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경상소득 120% 이상인 비율이 19.4%로 비노인가구의 10.4% 보다 높은 것임.

1) 본 원고는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원고를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표1〉 비노인가구와 노인가구의 소득계층별 구성

(단위: 가구)

소득계층	노인가구					비노인 가구	합계
	독거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 가구	기타 노인가구	계		
수급	19.1	3.4	2.3	6.1	7.2	2.5	3.8
법정차상위	34.8	17.9	7.3	14.7	17.2	3.3	6.9
소득차상위	12.6	27.9	9.9	18.9	15.3	4.0	7.0
차차상위	18.3	21.6	16.9	25.5	19.4	10.4	12.8
일반	15.2	29.2	63.6	34.9	41.1	79.8	69.5
합계	100.0 (1,468)	100.0 (1,178)	100.0 (42.3)	100.0 (838)	100.0 (6,072)	100.0 (16,839)	100.0 (22,911)

주: 1) 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2) 법정차상위: 수급가구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3) 소득차상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고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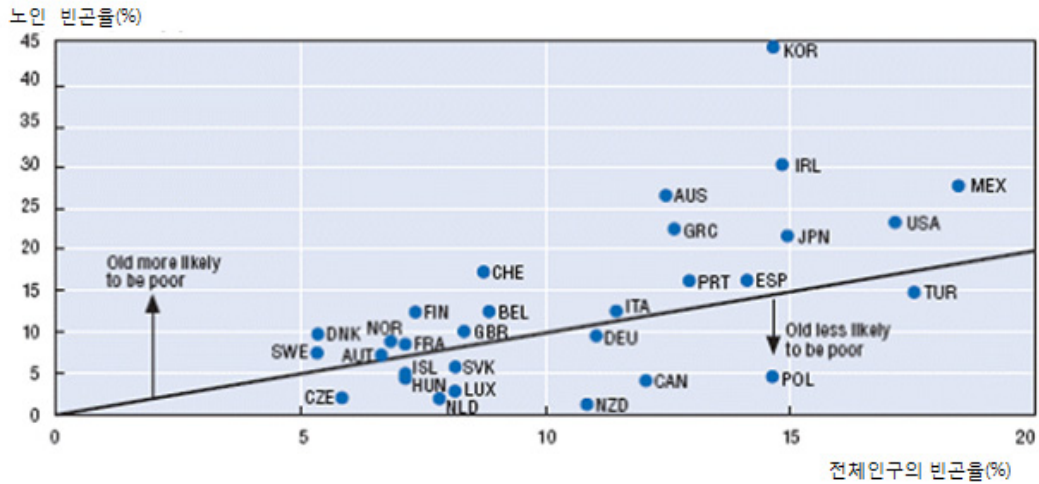
4) 차차상위: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상 ~ 180% 미만인 가구

5) 일반: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90% 이상인 가구

자료: 이현주 외,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2008.

- 타 연령층 대비, 외국의 노인층 대비 매우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음.
-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위가구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로 측정되는 상대빈곤의 개념에 기초할 때 한국노인의 45%가 빈곤상태임.
- 이는 OECD 평균 13.3%에 비하여 약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한국 다음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아일랜드(31%)에 비해서도 14%포인트가 높은 것임.
- 이러한 한국노인의 빈곤율은 전체인구의 빈곤율에 비하여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임.
- OECD회원국의 전체 인구의 평균 빈곤율은 10.6%인 반면, 노인빈곤율은 13.3%으로 약간 높음.
-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분석대상국가중 전체인구의 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임.
- 노인소득의 상대적 수준과 노인 빈곤율에 기초하여 OECD 국가를 분류한 결과 한국은 호주, 아일랜드와 함께 전체소득 대비 소득의 크기가 적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노후소득 고위험군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그림 1] 노인과 전체인구의 소득빈곤의 관계(2000년대 중반)



자료: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09』, 2009.

- 최근의 국내자료를 활용하여 한국노인의 빈곤실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한 절대빈곤율은 전체가구가 9.40%인데 비하여 노인가구의 경우는 22.75%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상대빈곤개념에 기초할 경우 전체가구의 빈곤율이 20.11%인데 비하여 노인가구는 44.81%로 2배가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빈곤갭 비율의 경우도 전체가구가 6.95%인데 비하여 노인가구는 16.52%이다. 이러한 수치는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약간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노인가구가 경험하는 빈곤문제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음.

〈표2〉 비노인가구와 노인가구의 빈곤지수 비교

(단위: %)

구분	최저생계비기준 (절대빈곤)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	
	빈곤율	빈곤갭비율	빈곤율	빈곤갭비율
전체가구	9.40	1.98	20.11	6.95
노인가구	22.75(15.40)	4.85(2.48)	44.81(40.31)	16.52(12.63)

주: 2007년도 경상소득 기준 분석임.

()안의 수치는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도입 후의 빈곤실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3차조사』, 원자료.

정경희 외,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2009.

- 노인은 타인의 소득에의 의존도가 높아, 노인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2%에 불과하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특히 그 비율이 낮아 20.4%에 불과함.
- 개인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전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아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이 38.0%,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이 5.1%이며, 공적연금은 8.1%, 기초노령연금은 20.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6.0%를 차지하고 있어 공적이전소득은 노인개인소득의 34.4%를 차지함.
- 반면 근로소득은 5.5%, 사업 및 부업소득은 8.4%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표3〉 노인의 소득구성 실태

(단위:%)

	근로 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공적 연금	기초노령 연금 (경로연금)	친인척으 로부터의 보조금	사회단체 로부터의 보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개인 소득 전체	가구소득중 개인소득의 비중
전체	5.5	8.4	8.1	20.3	38.0	5.1	6.0	100.0	51.2
성									
남자	8.9	16.3	13.9	13.2	26.0	12.0	2.9	100.0	56.3
여자	3.5	3.8	4.7	24.5	45.0	1.0	7.8	100.0	47.6
가구형태									
노인독신	4.7	6.7	4.6	16.7	42.7	1.7	16.6	100.0	99.4
노인부부	5.5	11.2	9.5	13.0	42.5	11.6	2.6	100.0	51.9
자녀동거	5.9	6.4	7.7	30.4	32.2	0.5	1.8	100.0	20.4
기타	6.2	7.5	12.9	25.0	25.9	1.3	10.0	100.0	34.0

자료: 정경희 외,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2009.

- 노인은 타 연령층과 다른 자산 구성을 갖고 있어, 재산을 소유한 노인의 비율이 높음.
- 노인가구의 약 3/2정도가 재산을 갖고 있으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은 있는 노인이 상당부분 있음(정경희 외, 『기초노령연금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2007).
- 이는 노인가구의 경우 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은 없더라도 노인이나 노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보유비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의 경제생활에 있어 주택, 토지 등 재산의 활용이 실제 가용한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2. 노후소득정책 현황과 문제점

-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구조가 탄탄히 구축되는 것이 필수적이나
 - 실제로는 국민연금 위주의 단층적 소득보장의 취약한 구조이며,
 - 국민연금 역시 납부예외자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가 광범위해 향후 전체 노인대비 연금수혜 계층의 coverage가 충분치 못함.

[그림 2] 현행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성

		일반소득계층			저소득층	
		피용자	자영자	공무원, 사학, 군인	차상위 저소득층	빈곤선 이하 계층
사적근로, 사적이전소득 등	4층					
추가보장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				
	2층					
1차 안전망 (공적연금 등)	1층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연금		
최종안전망 (빈곤선)	0층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 공적연금 및 특수직역 연금의 재정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추진이 이루어졌으나('07.7), 당초 계획과는 달리 소득대체율 인상만 이루어졌을 뿐 보험료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음.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비하여 재정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음.
- 일할 때의 수입 대비 퇴직 후 수입의 비중인 소득대체율(gross replacement rate)이 한국의 경우 42.1%로 OECD 평균 59.0%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해소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는 대폭적으로 해소되었으나 급여수준이 낮고,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수준이 전체 가입자의 27~28%에 달하고 있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필요.

□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 재직자노령연금제도 및 연기연금 제도 도입('07)을 통하여 고령자의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감액 등 제도설계 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책 체감도가 낮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실제 근로유인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음.
-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방식 합리화, 연기연금의 급여 증액폭(현재: 1년 6%)을 조정하여 연금 수급 연기에 따른 연금급여액의 증가폭 확대

□ 사적 연금제도의 도입 속도가 완만하여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미흡

- 2005년부터 퇴직금을 대신하여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으나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1994년에 도입된 개인연금 활성화 속도가 최근 둔화되기 시작
- 노년층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의 다양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활용방안 모색이 요구됨.

제2절 정책방안의 모색

1. 공적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1-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1) 필요성

- 국민의 32%가 노후준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재정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가 중요
- 노후준비율 : 준비안함(24.7%), 국민연금(32%), 기타공적연금(5.6%), 사적연금

- (13.4%), 퇴직금(2.9%), 예·적금(15.7%), 기타(5.4%) ('09.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
- 2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인하(70% → 40%)하였으나, 제1차 재정계산에서 제시하였던 보험료 인상(9% → 12.9%)조치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07.7월 제2차 재정재계산 및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있었으나, 향후 계속적인 재정안정성 강화 필요
 - * 현재 추세의 경우 연금기금은 2044년부터 적자 발생후 2060년 소진 예상
 - 오랜 기간 동안 연금제도가 확대되었고, 인구 고령화 또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여타 선진국들과 달리, 연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표 4〉 주요 국가별 연금보험료율 비교

	한국	미국(ODSDI)	캐나다(CPP)	스웨덴	일본
보험료율	9%	12.4%	9.9%	18.5%	국민연금 정액(월14천¥) 후생연금 : 15.35%
고령화율	08년 10.3% 50년 38.2%	06년 12.3% 50년 21.1%	08년 13.4% 50년 25.1%	00년 17.4% 50년 30.4%	00년 17.4% 50년 36.4%

2) 주요 정책 내용

-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완료될 2013년에는 제1차 재정계산 이후 보류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시적인 보완조치 마련 필요.
- 연금급여 적절성 차원에서 사실상 마지노선인 40%까지 하향 조정한 소득대체율을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 부담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제도개선안이 2013년 제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10)하여 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시스템 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금재정 자

동안정화 장치(Built-in stabilizer) 및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저연금 문제를 해소할 있는 방안 마련

- ※ 저출산·저성장 문제에 직면한 스웨덴,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금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 이미 300조원에 달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대 국민연금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자산운용방안 마련에 대한 청사진 마련
- 국·내외 투자 다변화를 통한 기금운영에서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방안이 마련·실행

1-2.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

1) 필요성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향후 직역연금 적자보전액 규모도 급증할 전망
- 공무원연금: '09년말 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정부의 적자보전금 증가 예상
 - 공무원연금 보전금 '10) 약1조원 → '12) 1.49조원 → '14) 2.79조원 → '18) 6.01조원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2차 개편안, '08.9)
- 군인연금: 20년 이상 재직시 연령과 무관하게 퇴역 즉시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 제기
 - 군인연금 보전금: '10)0.97조원 → '20)1.4조원 → '30)2.6조원 → '40)5.0조원 → '50)10.4조원 (윤석명 외, 2009,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안 연구 II』)
- 사학연금: 연금제도 개혁('10.1) 및 매년 책임준비금 계산 실시 중이나 지속적인 재정안정화 노력 필요

〈표 5〉 특수직역연금제도 현황 (2009년 12월말 기준)

구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¹⁾	군인연금 ¹⁾
도입연도	1960년	1975년	1963년
관장기관 (집행기관)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 (복지보건관실 군인연금과)
적용대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사립학교교직원	하사이상 직업군인

구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¹⁾	군인연금 ¹⁾
가입자 수	1,049천 명	257천 명	161천 명 ²⁾
연금수급자 수	293천 명	31천 명	68천 명
2009년도 급여지출규모	7조 6,848억 원	1조 3,730억 원	1조 9,880억 원
기금규모	5조 1,873억 원	9조 106억 원	4,740억 원
금기금소진	2002년	2029년	1973년

주: 1)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2008년말, 2007년말 기준임.

2) 군인연금 가입자수는 2004년 기준임.

2) 주요 정책 내용

-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9년 말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재정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
- 2009년 과거보다 더내고 덜받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
- 제2차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특수직역연금 개혁추이를 참고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고령사회에의 효과적인 대처차원에서 공무원연금 역시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다층소득보장체계의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미 2008년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검토하였으므로 향후는 제도 전환에 따른 이행비용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심도있는 검토 필요
- 2009년 말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사학연금 역시 장기적인 제도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시급.
 - 2010년 3월부터 사학연금 재정재계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상황 점검 및 재정안정화 방안 모색중
 - 사학연금 역시 고령사회에서의 노후소득다원화 및 국가의 한정된 재정지원여력을 고려하여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다층소득보장체계의로의 전환방안의 적극 검토 필요.
- 이미 연금재원의 상당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군인연금 역시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 및 발전방향 모색 차원에서 2008년부터 군인연금발전위원회를

운영중.

- 국가 안보를 당하는 군 특수성, 전역 후 취업의 어려움 등 군 특수성을 어느 정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재 퇴역즉시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취업·교육 등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연금수급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임

공적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관련 쟁점

- 적절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수준 결정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방법 모색
- 특수 직역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VS. 특수 직역연금의 특수성 인정
 - 공무원 연금: 최근(2009년 말) 더내고 덜받는 방향으로 개혁 실시, 공직사회의 반발과 사기 저하 우려
 - 군인 연금: 계급정년제로 인해 연금이 생활유지비용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음.

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2-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1) 필요성

- '08년 7월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공적연금 수혜율이 '07) 33.6% → '08) 74.4%로 비약적인 개선이 있었으나,
 - 급여수준(월 약9만원)이 낮아 노후빈곤예방 효과를 달성하기는 불충분하다는 지적
 -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인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역할, 급여수준 및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

2) 주요 정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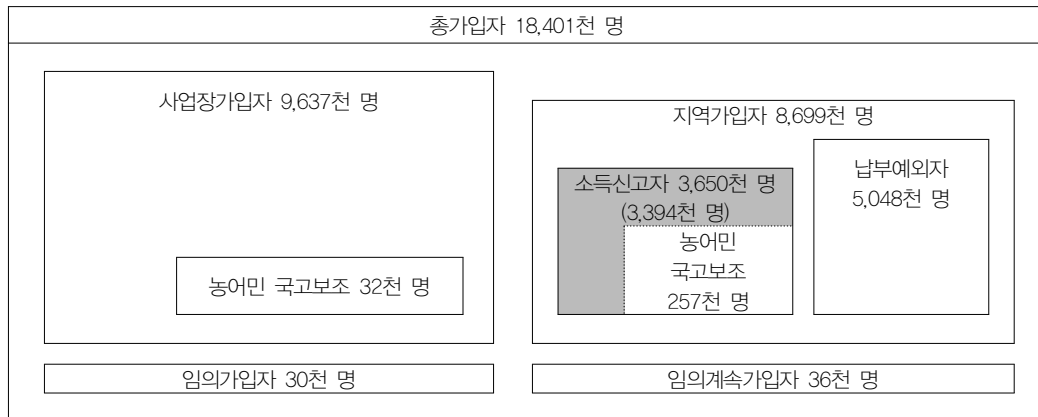
- 기초노령연금제도 지급대상 및 급여수준 개선안 수립 및 결정: 선별적 공공부조제 vs. 보편적 기초연금제

2-2.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

1) 필요성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1,840만 명 중 실직, 사업도산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505만명(27.1%), 2년 이상 장기체납자 110만명(5.9%)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09.11)
- 소득활동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자가 약 390만명 존재 하며 이들 중 약 71.5%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일 것으로 추정
 - 18~59세 취업자(2,066만명) 중 국민연금 가입 형태('09.8, 국민연금공단):
정상납부 1,347만명(65.2%), 적용제외 329만명(15.9%), 누락자 390만명(18.9%)
 - 이들 중 대다수가 장래 무연금자 또는 저연금자로 전락할 가능성 높음
-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 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고 있으나, 가입 누락 등 연금가입율이 저조해 대부분 사각지대로 방치된 상태
 - (특수형태근로자 현황) 보험설계사(20만명), 학습지교사(10만명), 골프장 캐디(3만명), 레미콘기사(2만명) (총 35만명)

[그림 3]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09년 5월 기준)



주: ■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3,650천 명)에서 농어민 국고보조 대상자(257천 명)¹⁾를 제외한 3,394천 명 중 저소득 보험료지원 대상자를 선정함.

자료: 윤석명 외(2009)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방안 연구』

1) 전체 농어민 국고보조 대상자 289천 명 중 지역가입자 규모는 약 257천 명임(사업장 가입자 32천 명 제외).

〈표 6〉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 ('09.11월)

	실직 및 휴업	사업중단	기초생활곤란	재학 및 병역	주소불명	기타
인원(천명)	3,916	434	339	310	31	18
비중(%)	77.6	8.6	6.7	6.1	0.6	0.4

-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연금제도에 동참하기 어려운 실정임.
- 노후준비실태조사(『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에 따르면 대다수 저소득계층이 노후준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노후를 준비할 소득이 없어서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 별다른 보완 대책없이 현재 상태로 유지될 경우 이들 대다수가 무연금자 또는 저연금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주요 정책 내용

-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신고누락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국민연금 가입유도 추진
 - ※ 국민연금공단 DB와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신고누락자는 약 390만명
- 자발적인 가입 유도: 사업체 실사 등 소득 파악 강화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한 설득 추진
- 근로장려금과의 연계: 근로장려금(EITC)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확인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검토
 - ※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상당수가 사회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국세청)
-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차상위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에 최저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
- 국고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경우 중단기적으로는 국고 투입에 따른 정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이들이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투입될 막대한 국고 소요재원

- 과 비교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국민연금 적용범위 확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 및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방안 검토
 - 이들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속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자로 분류됨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높아 국민연금의 가입율이 낮은 실정임.
 - 보험료 총액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며, 보험료 부담방식(사용자 50% 부담 vs. 근로자 전액 부담)을 사용자-근로자 간 합의해 선택
 - 산재보험에서의 제도운영 경험에 비추어볼 때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 산재보험에서는 이미 특수형태근로자들을 사업장 당연적용 대상으로 전환하였으나, 당연 가입 후 탈퇴하는 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70.3%).
 -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산재보험에서처럼 본인이 원할 경우 자진 탈퇴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관련 쟁점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방안 최종안 조기 확정 및 그에 따른 관련제도간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 모색
 - 선별적 공공부조제: (장점) 노인빈곤문제 해결 가능 (단점)공적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 해소 미흡
 - 보편적 기초연금제: (장점)실질적인 전국민 연금시대 도래 (단점)노인의 빈곤문제 해소에 한계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적절성 검토
 - 현재의 재정 투입규모 VS 미래의 노후소득사각지대 발생 예방 효과

3. 공적연금의 근로유인성 제고

1) 필요성

- 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평균수명 증가추이에 맞추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연금수급시점과 퇴직시점 간의 상당한 괴리 발생
 -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

- 어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인상될 예정.
- 그러나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간·국가간 경쟁 심화가 야기하는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 강요로 인해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퇴직연령은 이보다 훨씬 앞당겨지고 있어 퇴직시점과 연금수급시점간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 지속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근로·퇴직개념으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고령사회에 적합한 근로·퇴직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정책 내용

- 부분근로를 통해 파트타임으로 근로소득을 확보하는 대신, 감소한 근로소득은 연금으로부터 일부 확보하는 부분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연금수급 연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인 연기연금제도(현재 1년 연기시 마다 6% 증액)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연기연금제도의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67세 또는 70세까지)
- 일하는 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근로자가 (부분 근로 후) 퇴직시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퇴직금 등을 수령할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것이 근로소득으로 잡혀 노령연금 수급이 제한되고 있음.
- 실제 퇴직연도의 근로소득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수령 등으로 인해 당해연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공적 연금의 근로유인성 제고

- 제도 개선 방안의 도입의 적절한 속도 검토
- 유연한 근로형태와 연금제도의 정합성 제고 방안 모색

4.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4-1. 퇴직연금 활성화

1) 필요성

- 퇴직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가입률 및 적립액 저조
 - 전체 5인이상 사업장 15.21%인 77,865개소, 5인이상 상용근로자 37.82%인 293만명 가입, 적립금은 16조 7664억원 추산 (노동부, '10.4월 기준)
 - ※ (미국) 퇴직연금 적립액 10조 6천억 달러 (은퇴소득의 65%수준)
 - ※ 퇴직금 사용용도 : 기본생활비(53.1%), 저축투자(20.9%), 채무면제(7.6%) 주택 마련·이전·전세금(4.6%), 직업훈련 및 교육수강(4.1%), 자녀교육비용 및 결혼비용(3.5%), 기타(2.1%) (한국노동교육원)
-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30%)으로 사업장의 퇴직연금 전환이 늦어지고 있으며, 퇴직연금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 미약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유리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 필요
 - ※ 근로자대표 : 노조 혹은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적립금이 상실되는 위험이 있어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불안 초래
 - ※ <참고>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주요내용) 중간정산 요건 제한, 근로자 DB형 및 DC형 동시가입 추진, 신규사업장 퇴직연금가입 의무화 등

2) 주요 정책 내용

- 퇴직일시금보다 퇴직연금 선택이 유리하도록 세제 개선
 - (사용자측면) 사내유보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현행 30%)을 단계적(매년 5%)으로 낮추어 '15년까지 전면 폐지
 - (근로자측면) 퇴직일시금 소득공제액을 현행 45%에서 매년 5%씩 축소하여 '15년 20%로 조정

-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을 지속 확산
 -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퇴직연금 도입여부를 포함하여, 공공부문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확산 유도
-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지급보장 강화
 - (확정급여형(DB)) 사외적립비율(현행 60%)을 상향 조정하여 사업장 부도 등의 위험으로부터 연금수급권을 보호
- 개인연금과 별도로 퇴직연금 소득공제 인정
 - (현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 300만원 공제한도 적용
 - (변경) DC형퇴직연금 선택근로자의 추가납입금 소득공제 별도인정
 - ※ '11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상향하여 '15년 300만원 인정
 - ※ 해당 과제 시행시 개인연금 소득공제액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퇴직급여제도 비교

- ① 퇴직금제도 : 퇴직급여를 기업 자체적으로 적립, 기업의 도산 및 퇴직급여 미적립에 따른 체불, 근로자의 퇴직일시금 수령 후 일시 소비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불충분
- ② 퇴직보험 :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8년 도입되었으나 최저적립기준이 없고 직장이동시 퇴직금 통산장치가 없는 등의 문제로 '11년 폐지예정
- ③ 퇴직연금 :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표7〉 퇴직급여제도 비교

	퇴직일시금	퇴직연금(2005.12.1 도입)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비용부담주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과 같음)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 보다 같거나 많음)
비용부담수준	연간 임금총액의 30일분(1/12)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사용자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퇴직금과 같음 (매년 중간정산 기준)
적립방식과 수급권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부분 사외적립(60%), 부분보장	전액 사외적립, 완전보장
적립금운용	—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세제혜택	일시금 퇴직소득과세	연금수급시까지 과세이연	연금수급시까지 과세이연
사용자 세제혜택	사내적립 30% 손비인정	사내적립 30% 손비인정 사외적립 전액 손비인정 임금채권보장부담금면제 (퇴직금부문)	사외적립 전액 손비인정 임금채권보장부담금면제 (퇴직금부문)
적합기업 및 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	연봉제,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일정요건 하)
가입률('10.4)	—	5인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37.82%	
		78.1%	18.8%

※ 개인퇴직계좌(IRA) : 퇴직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기 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 중도인출 가능 ('10.4월 현재 가입률 3.1%)

4-2. 개인연금 활성화

1) 필요성

- 공·사연금제도간 역할분담을 통한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
 - 민영보험회사에 의한 개인연금상품은 2000년까지는 ‘개인연금저축상품’, 2001년부터는 ‘연금저축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 1994년 개인연금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자산규모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그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음.

- 국내 개인연금 자산규모 : '02) 22.4조원 → '04) 29.9조원 → '06) 30.5조원
- 개인연금 자산규모의 성장률도 2006년의 경우 구개인연금은 2.7%, 신개인연금은 69.2%로 높으나, 그 성장률이 구개인연금은 2002년의 10.8%에서, 신개인연금은 2002년의 149.1%에서 각각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개인연금저축의 납입금도 자산규모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성장률이 감소함
- 1994년에 도입된 개인연금 활성화 속도가 최근 둔화되기 시작
 - '02: 103.3%→ '06:78.0%
- 개인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7.5%로 예상되어 매우 미흡
- ※ 국제기구(OECD, World Bank 등)의 권장수준 20~30%

2) 주요 정책 내용

- 소득공제가 충분한 유인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소득별 소득공제 차별화
 - 소득수준에 따른 공제한도액을 차등화하여 중하위 계층에 보다 높은 공제 한도액을 적용
 - 특히 중하위 계층의 경우 공제 한도액을 현재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300만원인 것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분리하여 각각의 경우에 300만원을 공제 한도액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정책효과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정소득 이하의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의 경우 세제적격 개인연금에서 요구하는 기간 충족 시 개인의 납부금액에 비례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안 고려
 - 이는 이들이 정부의 보조가 없었으면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노후빈곤으로 국가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경우 기업차원의 보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음
- 자산운용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개인연금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폭 확대
 - 수익률제고, 개인특성에 맞는 선택 가능성제고 등을 개인연금의 활성화에 기여함

4-3. 역모기지제도 확대

1) 필요성

-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비중은 낮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으며 특히 은퇴를 앞둔 고령자 계층의 실물자산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함
- 은퇴자의 순자산 중 금융자산은 7.5%, 부동산자산은 91.4%(9,345만원)('08.노동연)

〈표8〉 주요국가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비중

구 분	한국('06)	미국('05)	일본('04)
부동산 비중	78%	42%	39%
금융자산 비중	22%	58%	61%

자료 : 삼성금융연구, '가계금융 이용실태' (2006)

- 베이비붐세대 은퇴 및 부동산시장 침체로 생계유지를 위한 실물자산 현금화 곤란이 예상되며, 향후 고령층 보유 부동산에 대한 유동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노년층 소득확보에도 어려움 발생 가능
- 미국,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함께 35~54세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주택가격이 하락. 우리나라도 35~54세 인구가 감소하는 '11년부터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

2) 주요 정책 내용

-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역모기지제도 도입
 - 저소득층의 경우 적용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이자를 하향조정.
 -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근저당 설정을 통하여 주택구입 또는 긴급자금 대출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도록 함.
 - ※ 현재의 적용 주택 조건:
 - ▶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
 - ▶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
 - ▶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는 주택

- 주택가격에서 설정된 권리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경비 및 대출이자를 50%로 하향 조정.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자(안) 등으로 저소득층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범위 명확화.
- ※ 미국: 저소득층일수록 주택금액의 상한액이 작고 이용비용이 저렴하며, 고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큰 반면, 이용비용이 비쌈
- 저소득층 대상:HECM, 중산층 대상 FNMA의 Home Keeper
- ※ 일본: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모기지 제도인 장기생활지원자금 대출제도 및 요보호 세대를 위한 신대출 자금제도 도입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관련 쟁점

-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에 있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비중에 대한 논의 및 공감대 형성
 - 공적연금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보완적인 역할 수행
 - VS.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 발전, VS. 공적 연금보다 사적연금의 높은 비중
-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소득별 소득공제 차별화 및 개인연금 만기납부를 위한 납부금액 비례형 정부보조의 타당성 검토
-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역모기지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통합 실행조직 운영방안

손 성 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통합 실행조직 운영 방안

2010년 6월 23일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MIRAE ASSET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목 차

- I. 검토배경
- II.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3대 추진방향
- III.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10대 세부 추진과제

MIRAE ASSET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I. 검토 배경 - 노후준비 개념의 불균형

재무적 준비에 관심 집중

노인의 4大 괴로움 : 궁핍, 질병, 고독, 죽음

효율성

차가운 이성과
경제 논리

VS.

휴머니즘

자본주의도 따듯
할 수 있다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연구소

I. 검토 배경 - 고령화시대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

노후는 길고, 준비기간은 짧다

국민연금은 줄어드는데, 자조노력에도 구멍이 뻥

노후는 아름답다지만, 그것은 남의 일

고령화는 KTX를 타고 땀땀, 우리는 뚝배기를 타고 유유자적

체계적 · 종합적
정책 추진 필요

전담 실행조직(노인복지공단) 설립

- 자원과 정보의 효율적 배분
- 민 · 관 합동 작전
- 복지부는 정책입안과 컨트롤타워 역할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연구소

II.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3대 추진방향

1

정보불균형
해소

- 정보채널 일원화&다양화
- 전국민적 은퇴교육 활성화
- 고령자 전용 콜센터 운영

2

일하는 삶의
연장

- 고령자 인력뱅크 운영
- 세대간 결합을 위한 티칭 프로그램
- 노인회관과 어린이집의 결합
- NPO 설립 지원 및 감독

3

건강한 삶의
추구

- 고령자 전국체육대회 개최
- 노인간병 요양제도의 개선
- 고령사회 열린공동체 캠페인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연구소

III.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10대 세부 추진과제

① 정보채널 일원화&다양화 → 정보불균형 해소

노인복지공단(가칭)

·고령자 대상 정보제공채널 통합관리

- TV(실버방송 有), 라디오, 홈페이지 등
 - 필요정보 제공
 -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종합 은퇴생활 은퇴지 제공
- ※건강보험 월간지 '건강IN' 참조

기업

- 정년 퇴직자에게 적극 안내
- 필요시 근로자에게도 제공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연구소

Ⅲ.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10대 세부 추진과제

② 전국민적 은퇴교육 활성화 → 정보불균형 해소

노인복지공단(가칭)

·은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파견

- 강사 Pool 확보
- 고령자 중 강사 선발
- 선배 고령자가 후배 고령자에게 ‘은퇴생활 만끽하기’ 교육
- 동사무소 및 백화점 문화센터 등과 연계

기업

·기업내 은퇴교육 도입

- 고령화시대 은퇴교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연령대별 · 직급별 교육
- 와이어하우저, 매일유업 등 참조
- 노인복지공단에 강사추천
- 공단의 강사 및 콘텐츠 적극 활용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연구소

Ⅲ.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10대 세부 추진과제

③ 고령자 전용 콜센터 운영 → 정보불균형 해소

노인복지공단(가칭)

· 고령자 도우미, 콜센터 설립

- 일상생활(집 버리기, 전기시설 수리 등), 응급상황 등에 대비
- 다산 콜센터 B/M
- 동사무소 등을 통해 전국 노인가구에 이용방법 스티커 배포

기업

·임직원의 등록지원

- 임직원의 집과 가까운 거리의 노인가구를 연결
- 노인가구의 일상생활 지원
- 기업내 사회봉사조직과 Hotline 구축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연구소

Ⅲ.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10대 세부 추진과제

④ 고령자 인력뱅크 운영 → 일하는 삶의 연장

노인복지공단(가칭)

·고령자 인력뱅크 설립

- 산재되어 있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총괄 관리
- 은퇴를 앞둔 근로자 DB 구축(연령별/직무별/지역별/성별 등)
- 근무지 경력인증제 도입을 통해 정보비대칭 해소
- 장기파업 대체인력, 자원봉사, 사회근로 등에 활용
- 고령자 인력뱅크는 취업알선을 뛰어넘어 고령자의 생활전반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재교육, 독거노인 이어주기, 취미생활 등)

기업

·고령자 인력뱅크 운영 지원

- 최종 근무지에서 희망자에 한해 인력뱅크로 DB 전송

·인력뱅크를 통해 고령자 역량 적극 활용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Ⅲ.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10대 세부 추진과제

⑤ 세대간 결합을 위한 티칭 프로그램 → 일하는 삶의 연장

노인복지공단(가칭)

·노인은 의미(가치)의 수호자일 때 행복

·유치원, 초/중/고 등에서 전문지식 전파 기회 제공

·고령자 인력뱅크 활용

기업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Ⅲ.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10대 세부 추진과제

⑥ 노인회관과 어린이집의 결합 → 일하는 삶의 연장

노인복지공단(가칭)

-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회관의 경우 어린이집 설립토록 지원
- 자연스레 세대간 연결

기업

- 어린이집 운영시 인근지역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고령자인력뱅크에 노인 전문인력을 강사로 활용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연구소

Ⅲ.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10대 세부 추진과제

⑦ NPO 설립 지원 및 감독 → 일하는 삶의 연장

노인복지공단(가칭)

- 노인들은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자리를 희망
- NPO법 제정

기업

- NPO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
- 임직원의 NPO 가입 지원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연구소

III.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10대 세부 추진과제

⑧ 고령자 전국체육대회 개최 → 건강한 삶의 추구

노인복지공단(가칭)

- 체력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초석
- 현행 전국체전에 고령자 부분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대회 개최

기업

- 인근 지역 고령자에게 운동장, 체육시설 등 적극 대여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연구소

III.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10대 세부 추진과제

⑨ 노인간병 요양제도의 개선 → 건강한 삶의 추구

노인복지공단(가칭)

- 노인간병의 주 담당자인 딸과 며느리 지원 필요
- 요양제도의 외래진료화 유도
- 요양관련 공적자금 재배분

기업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연구소

III. 따뜻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10대 세부 추진과제

⑩ 고령사회 열린공동체 캠페인 → 건강한 삶의 추구

노인복지공단(가칭)

▪ 젊은 주부는 옆집 노인의 장을 봐주고, 옆집 노인은 이웃집 아이 돌보기

▪ 동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 지역의 부녀회 등 적극 활용

기업

▪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적극 추천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그룹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